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1 2 3 4 5 6								
<u>매우</u> 높은 위험	<u>높</u> 위	<u>다소</u> 높은 위험	<u>보통</u> 위험	<u>낮은</u> 위험	<u>매우</u> <u>낮은</u>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취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u>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u>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u>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CW960)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4월 1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4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1 좌 = 1 원)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 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8.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 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 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 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목차 CONTENTS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간이투자설명서〉

높은

위험

작성기준일: 2025.04.14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W960]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 0	다소		0	매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해외 및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종목의 가격변동에 매우 보통 낮은 따른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 정책 등에 따른 높은 낮은 위험 위험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 송금지연, 투자대상국의 거래소 장기간 휴장에 위험 위험 따른 **환매지연 위험**,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90%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 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 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인컴 자산 및 배당성장주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 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기본 운용 전략]

구분	진단	대안
거성장	- 글로벌 경기위축과 보호주의 강화	인컴 배당귀족(배당성장)
~100	- 구경제의 몰락과 신성장 기업들의 탄생	기회
한국경제와	- 글로벌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경제구조	
증시 상대적	- 불리한 인구구조, 정체된 생산성 향상	글로벌 투자
부진 심화	- 기존산업 하향세, 신성장 동력 부재	
그근버 경기	-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가 부채	
글로벌 경기	- 지정학적 갈등 심화	통화 분산
침체 가능성	- 자국우선주의, 포퓰리즘 추세 강화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구분	인컴	인컴 배당귀족			
투자비중	± 40%	± 40%	± 20%		
목적	- 높은 수준의 배당/분배금 수취로 규칙적 현금 흐름 확보 - 낮은 변동성으로 펀드 수익률 안정성 제고	높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으로, 주식에서 퀄리 티, 배당, 성장 요인의 조화를 통해 안 정감 있고 꾸준한 자본차익과 배당 동 시 추구	매크로, 산업, 기업, 테마 등에 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발굴을 통 해 적극적 자본 차익 추구		
주요 투자대상	일반 주식 대비 변동성이 낮고 배당(분배) 수익률이 벤치마크지	장기간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으로 이는 견조한 사업 구조와 높은 주주환	운용사 자체 리 서치 및 투자		

	수 대비 높은 자산 (고배당주식, 리츠 권, 커버드콜ETF 등	., 우선주, 채	당금을 증액한 기업 (S&P 500 Dividend Aris Return Index 구성 기업) - 비미국주식(Non-US): 고 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	tocrats Total 나거 5년간 매	기회 발견
예시	채권형 이머징현지 통화채권, 이 머징달러통 화채권, 미국 하이일드회 사채  실물자산형 미국부동산 리츠, 일본리 츠, 맥쿼리한 국인프라  ※ 상기 예시는 E	주식형 한국고배 당주식, 미 국우선주, 미국고배 당주식  기타 나스닥커 버드콜, 미 국MLP, BDC	S&P 500 Dividend Aris Return Index Top 10 종도  종목명 AbbVie Inc. Consolidated Edison Inc. Brown & Brown Inc. Coca-Cola Co. Kenvue Inc. J.M. Smucker Co. Chubb Limited. Johnson & Johnson Roper Technologies, Inc. Atmos Energy Corp.		- 글로벌 매크 로 환경의 변곡 점 포착 - 개별 기업의 턴어라운드 확 인 - 장기 성장 테 마 추종

-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펀드 포트폴리오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 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비용 예시 (단위: 천원)					
	클래스 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이내	1.5820%	0.70%	1.580%	1.5832%	265	433	607	973	2,0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8820%	1.00%	1.670%	1.8820%	197	400	609	1,046	2,261
투자비용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이내	1,2320%	0.35%	1.200%	1.2334%	180	314	452	746	1,57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1.3820%	0.50%	1.350%	1.3829%	146	296	453	782	1,71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mark>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 '비용)을 의미</mark>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u>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u> 2024,01.16~ 2023,01.16~ 2022,01.16~ 2020,01.16~ 2019,12,02~

#### (연평균 수익률)

	2025,01,15	2025,01,15	2025.01.15	2025,01,15	2025,01,15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17.05	15.18	9.71	13.25	13.26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24
수익률변동성	7.92	7.83	9.83	13.38	13.21

(주1) 비교지수 = (0.95 \* [MSCI ACWI (USD)]) + (0.05 \* [CALL금리])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del>운용</del>전문 인력

			운용	운용현황		<del>동종</del> 집합 - 수익률(해외		<b>님: %</b> )	운용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기 운용규모( 구 수(개) 억원)		운용	용역	운영	용사	경력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년수
정신욱	1980	책임 (수석)	7	2,376	18,92	16.98	18,92	16,98	16년 8개월
박종한	1983	부책임 (수석)	12	2,805	18.92	16.98	18.92	16.98	2년 11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 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 의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 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니나.								
	구 분		투자위험의	·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L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라 손익이 결정되는 습니다. 따라서 투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 당사자도 투자손 은행의 예금과 달리	·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변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한 ·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   실적 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이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험이 사나 <u>:</u> 한,				
	주식 등 가격 변동위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	험에 노출됩니다.	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주식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됨 '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기 상승하면 채권가	석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 등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b>나서</b>				
주요투자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특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출이 되어 있고, 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 1화 및 사회전반적인 국가의 세법에 의한 으로 높은 세율이 2	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성 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경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 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저 민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 역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	상의 년, 년, 1한, 등의 년,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관련 위험	대해 양국간에 이중 과세 조 있습니다.	정제도가 정비되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 않았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환매지연위험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다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 재산의 기 변동(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환전과정도 포함)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del>환율</del> 변동위험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시험을 지게 됩니다. 통화간의 상대적 7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때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이다시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등에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네도 거나 화에				
	<b>환해지 위험</b> ※상기 위험들은 일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수도 있으며, 횐해지 된 부분 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한율변동으로 한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감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환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	목적으로 합니다. 된 자산의 환율변동 이라 하더라도 외환 인한 각각의 환차선 소되는 것은 아니마 : 프리미엄 등에 대 과를 나타내는 것은	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 · 위험을 축소하고자 부분 환혜지 전략을 수형 시장의 상황 및 자산가격 변동, 예상 이익분비 는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는 없는 네 또한,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다라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선 아닙니다 남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할 금 등 등 탁				
	17시 이전에 자금을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매입 방법	자금을 납입한 영역	로 납입한 경우, 업일로부터 3영업일(D+2)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	환매 방법	가지이전에완배들경구인경우환매청구일로부터4영업일(D+3공고되는기준가격을적용8영업(D+7)에관련세금등을공제한환매대금을지급합니다	)에 <u>업일</u>				
		을 납입한 경우: 업일로부터 4영업일(D+3)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		17시경과후에환매를청구한경우환매청구일로부터5영업일(D+4공고되는기준가격을적용.9영업	.)에				

	El .			(D.O)에 기거내기 드이 고개된 후					
	다.			( <u>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u>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u></u> 환매			-	<u> </u>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인 기즈가격 = (저인 지칭	하트자기구 재사초애 - 브레초	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죄수					
	산정방법			국가단을 합합 <del>다시기 중의  </del> 부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기준가	공시장소		투자업자 (vam.koreainvestr	.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	fia.or.kr)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합니다.					
	구분	717 5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과세의 주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지	h에 대한 과세(종류 C-P	,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의					
				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4	으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111	수익자			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손실이							
			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원,					
				,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이 않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이자수익(50 원)의 합계만	큼 추가된 1,100 원(1,000	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	한국투자밸류자 <sub>·</sub>								
투자업자	, . –	5978.6300 / 인터넷홈 <sup>피</sup>		·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모집・매출총액						
효력발생일	2025년 4월 22	_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	am.koreainvestment.c	,	□ <del>-</del> -					
		회(dis.kofia.or.kr)의 인 나이모장 오야 개무정		쓰아시기 마닙니다. ·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					
참조		사업폭식, 요약 새부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글경시 세4구 업업무사기구 판단회					
				  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					
			. – – –						
	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 같습니다.								
		의. 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중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종류	수수 서최			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b>					
	판매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b>수류</b> │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구(C)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가 익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노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b> 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mark>
	온라인(e)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온라인으로 판매되는</mark>
판매	오프라인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경로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자산운용시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근다한 슈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S)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
	되색인급(K)	자기구입니다.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기타	저비용(G)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나		Wrap Account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랩(W)	「조세특례계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12L/c)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가 매입
	기관(F)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А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CW961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CW962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W963
	С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W964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W965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W966
한국밸류 글로벌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CW967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W968
CW960)	C-l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CW969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CW970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W971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W972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W973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W974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D1421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1)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10 조좌 (1 좌 = 1 원)

-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 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개시일: 2019 년 12 월 02 일
- (2)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3)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W960)

	종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		_	. =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CW961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CW962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W963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W964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W965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W966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CW967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W968	Wrap Account 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또는 특정금전신탁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CW969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CW970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W97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W972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회사의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습니다.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W973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W974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D1421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9.12	최초설정
2020.02	종류 S-P 신설
2021.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1.04	투자자문 삭제
2022.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22.0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
	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2.09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타스 -> KB 국민은행)
2023.12	위험등급 변경(2 등급: 높은 위험 →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2025,0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클래스 관련 설명 개정)							
	-글로벌배당인컴 모/글로벌배당인컴 자 펀드명 변경(투자전략 구체화에 따른 펀드명 변경)							
2025,04	-글로벌배당인컴 모펀드 투자전략 구체화 및 업데이트							
2025.04	-글로벌배당인컴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월지급식)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2025.04	글로벌배당인컴 모펀드 투자전략 구체화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5,01,15 기준)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단위: %)				운용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역		운용사		경력
					운용규모(억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년수
정신욱	1980	책임 (수석)	7		2,376	18.92	16,98	18,92	16,98	16년 8개월
박종한	1983	부책임 (수석)	12		2,805	18.92	16.98	18.92	16.98	2년 11개월
	Ş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74	110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신욱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7~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바조하				- 서스틴베스트(2012~2020)						
박종한			- BNK 자산운용(2020~2021)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21~현재)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정신욱, 박종한 - 해당사항 없음]

- 주1)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 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나. 최근 3 년 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1.01.15~2022.01.20	정신욱	-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 <del>용</del> 전문인력
2022.01.21~현재	정신욱	박종한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투자신탁(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30	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 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H	랩(W)	Wrap Account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10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및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혹은 기관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1)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u> 자투자신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고투자신탁	한국밸류 <u>글로벌 배당인컴</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u>글로벌 배당인컴</u> 증권자	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50% 미만
한국밸류 월지급식 <u>글로벌 배당인컴</u> 증권자투자신 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							해외 및	
	투자대상	국내주식에 투자	나						
	투자목적	인컴자산 및 배당성장주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x0.95)+([Call 금리]x0.05)							
		▷ 투자전략							
		구분		7	<u> </u>		대위	간	
			- 글로벌	경기위축:	과 보호주의	강화	인	컴	
		저성장	- 구경제	의 몰락	과 신성장	기업들의	배당귀족(박	배당성장)	
			탄생				7 5	2	
			- 글로	.벌 경기	기사이클에	민감한			
			경제구조				그ㄹ버	E7L	
		증시 상대적 	- 불리한	- 불리한 인구구조, 정체된 생산성 향상			글로벌 투자		
		부진 심화	- 기존산업 하향세, 신성장 동력 부재						
		글로벌 경기	-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가 부채						
한국밸류 글로벌			- 지정학적 갈등 심화			통화 분산			
배당인컴		침체 가능성 	- 자국우선	선주의, 포	풀리즘 추세	강화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전략	〈인컴, 배당귀족, 기회의 3중 구조로 안정성, 퀄리티, 성장성의 균형 추구〉							
	및 위험관리	■ 인컴: 고배당 저녁		■ 배당귀족: 매년 늘어 ■		▮ 기회: 알피	i 창출을		
		동성 자산의 규칙적 현		나는 배당과 검증된 퀄 우		이한 적극적 !	투자 기회		
		금 흐름 확보		리티		5	모색		
		- 주가 변동성	이 낮고 - US: 배당 귀족주, :		, 25 -	- 글로벌 매크로 환경			
		배당(분배)수익	률이 높	년 이상	l상 매년 주당 배 의 변곡점 포		착		
		은 자산		당금을 증액한 기업 -		- 개별 기업의 턴어라			
		(글로벌 리츠, 미국		- Non-US: 5년 이상 매 -		상 매 문	운드 확인		
		선주, 인프라	펀드, 고	드, 고 년 주당 배당금을 증액		증액 -	장기 성장 E	네마 추종	
		금리 채권, 고	내당 보	한 기업					
		[ ] 통주 등)							
						L			
		▷위험관리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혯지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면서 운용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60%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인컴자산 및 배당성장주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 집합투자규약 제3조 제5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수익증권 90% ( 2 유동성자산 이호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①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은행계정대		법 시행령 제26	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Entritt Entrito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주식	60% 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 이하	-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4	자산유동화 증권		
\$	집합투자증권등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미만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의 의하여 발행 된 것	
금리스왑거래		투자신탁	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해지 및 헤지외목적
30	<b>6권의 대여</b> <sup>주3</sup>	- 투자신탁C	l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파생상품		주식·채권 것 - 파생상품 - <mark>투자목적</mark> :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까지 투자 해지 및 해지외목적 (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에 한한다)
환매조건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중권의 차입 <sup>주4)</sup> - 투자신탁자산 자산총액의 20% 이하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 주2) 상기한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1. ETF 매매 편의성 증대: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
  - 2.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 3.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 <u>주4)</u>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 모펀드 해당)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품자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을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처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무까지의 남중권에 당하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가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구독적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전체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하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표하는 경우에 그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강,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이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법인 발행지분 <del>증</del> 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ul> <li>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계열회사발행 증권투자	-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u>주1)</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②~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주2) 주 1)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 ②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 <u>주3)</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의 신용평가등급이 '가.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향후 주가상승 및 배당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 ◈ 비교지수 = ([MSCI ACWI] x 0,95) + ([Call금리] x 0.05)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95% 반영하고, 투자신탁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유동 자산의 흐름을 5% 반영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MSCI ACWI(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모건스탠리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MSCI ACWI 지수를 통해 세계 증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 운용 컨셉

글로벌 저성장 환경, 국내 경제와 증시 부진,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배당인컴 펀드를 출시. 인컴, 배당귀족(배당성장), 기회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를 지향

구분	진단	대안
저성장	- 글로벌 경기위축과 보호주의 강화 - 구경제의 몰락과 신성장 기업들의 탄생	인컴 배당귀족(배당성장) 기회
한국경제와 증시 상대적 부진 심화	- 글로벌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경제구조 - 불리한 인구구조, 정체된 생산성 향상 - 기존산업 하향세, 신성장 동력 부재	글로벌 투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가 부채 - 지정학적 갈등 심화 - 자국우선주의, 포퓰리즘 추세 강화	통화 분산

구분	인컴	배당귀족	기회
투자비중	± 40%	± 40%	± 20%
목적	- 높은 수준의 배당/분배금 수취로 규칙적 현금 흐름 확 보 - 낮은 변동성으로 펀드 수익 률 안정성 제고	높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으로, 주식에서 퀄리 티, 배당, 성장 요인의 조화를 통해 안정 감 있고 꾸준한 자본차익과 배당 동시 추구	매크로, 산업, 기업, 테 마 등에서 초과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기 회 발굴을 통해 적극 적 자본차익 추구
주요 투자대상	일반 주식 대비 변동성이 낮고 배당(분배) 수익률이 벤치마크지수 대비 높은 자산(고배당주식, 리츠, 우선주, 채권, 커버드콜ETF 등)	장기간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으로 이는 견조한 사업 구조와 높은 주주환원 의지를 반영 - 미국주식(US): 과거 25년간 매년 배당 금을 증액한 기업 (S&P 500 Dividend Aristocrats Total Return Index 구성 기업) - 비미국주식(Non-US): 과거 5년간 매 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	운용사 자체 리서치 및 투자 기회 발굴에 따른 초과 수익 기회 발견

	채권형
	이머징현지
	통화채권,
	이머징달러
	통화채권,
	미국하이일
	드회사채
예시	
•	실물자산형
	미국부동산
	리츠, 일본
	리츠, 맥쿼

라

리한국인프

**주식형** 한국고배 당주식, 미국우선 주, 미국 고배당주 식

기타 나스닥커 버드콜, 미국 MLP, BDC

※ 상기 예시는 ETF 등 집합 투자증권 유형 S&P 500 Dividend Aristocrats Total Return Index Top 10 종목

종목명	섹터
AbbVie Inc.	헬스케어
Consolidated	유틸리티
Edison Inc.	
Brown & Brown Inc.	융
Coca-Cola Co.	필수소비재
Kenvue Inc.	필수소비재
J.M. Smucker Co.	필수소비재
Chubb Limited.	융
Johnson & Johnson	헬스케어
Roper	정보기술
Technologies, Inc.	
Atmos Energy Corp.	유틸리티
* 20	25년 3월 기준

- 글로벌 매크로 환경 의 변곡점 포착
- 개별 기업의 턴어라 운드 확인
- 장기 성장 테마 추종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펀드 포트폴리오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펀드 포트폴리오 예시]

투자비중		
트랜치	중비자쿠	
인컴	36.62%	
배당귀족	37.36%	
기회	22.47%	
기타(파생, 예수금 등)	3.55%	
Total	100%	





- ※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년 2월말 기준 자료
- ※ 상기 자료는 예시이며 실제 포트폴리오 내 편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운용전략 및 전망은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운용 프로세스

개별 자산에 대한 bottom-up 분석과 top-down 분석 병행

프로세스	주요 내용
Screening	- 인컴: 변동성, 배당수익률 등

	- 배당귀족(배당성장): 배당성장 지속기간 (미국 25년, 그 외 5년이상) 등
	- 기회: 매출액 성장률, 재무건전성, 밸류에이션 등
Bottom-up	- 인컴: 자산의 퀄리티,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 인컴수익의 지속성 등
Research	- 배당귀족(배당성장): 비즈니스모델의 견고함, 이익성장 지속성 확인 등
Research	- 기회: 산업 성장성, 기업 해자 보유 여부, 주가 저평가 요인 해소 가능성 파악 등
국가/통화별	그가병 토취병 비즈오 베팅미그 데비 +2000 ~ 편한 네에서 고디
투자비중	- 국가별, 통화별 비중은 벤치마크 대비 ±20%p 편차 내에서 관리
	- 변동성 낮은 인컴자산은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세심한 매매전략 시행
포트폴리오	- 배당성장은 중장기 Buy&Hold 전략으로 배당수익과 자본차익 동시 추구
운용	- 환변동 위험은 외화 익스포저 노출 통한 포트폴리오 안정성 최우선, 단 환율
	레벨에 따라 일부 헷지를 통한 변동성 관리 노력
חוובוז	- 자산간 상관 관계 감안,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추구
모니터링	- 성과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수행(국가, 통화, 트렌치 등)

####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95% 반영하고, 투자신탁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유동 자산의 흐름을 5%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비교지수 = ([MSCI ACWI] x 0.95) + ([Call금리] x 0.05)

※ MSCI ACWI(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모건스탠리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MSCI ACWI 지수를 통해 세계 증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4) 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

구분	미국	일본	
통화	USD(달러)	JPY(엔)	
인구 (2025년)	347,276 (천명)	123,103 (천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23년)	65,020 (달러)	37,079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22년)	65,103 (달러)	37,124 (달러)	
경제성장률(실질) (2023년)	2.5 (%)	1.9 (%)	
수출금액 (2025년 1월)	9,291,476 (천불)	2,346,014 (천불)	
수입금액 (2025년 1월)	5,830,960 (천불)	3,584,338 (천불)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위험관리 전략을 수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혜지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면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주식 등은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일본엔화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의 관리방안으로는 비교지수(MSCI ACWI)의 특성상, 미국달러 비중이 60%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당사 포트폴리오 또한 달러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원달러 환율과 투자자산(주식)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화 익스포저가 포트폴리오 투자자산가치에 대한 방어역할을 일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과 투자 자산간 상관관계는 투자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환율 수준에 따라 평균 회귀 관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헷지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혜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혜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혜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경우 노출되는 통화의 50% 이내에서 환혜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목표 헤지비율	기준일(20241201) 현재 환혜지 비율	2023,12.02 ~ 2024,12.01
노출통화의 50% 이내	13.422555	1,404,000

(4) 환혜지와 관련하여 환혜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화헤지라?

환혜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글로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대부분은 글로벌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 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혜지를 실 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혜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혜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투자신탁의 투 자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혜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 용이 소요됩니다

####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외국 주식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일반위험

가. 할만취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丁正	
주식 등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l>한</del> 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해지 위험	환해지는 외화자산이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하고자 부분 환혜지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환혜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및 자산가격 변동, 예상 이익분배금 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는 없는 등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혜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국가위험 및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정책변경위험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관련 위험	해외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 양국간에 이중 과세 조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위험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거래중지위험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중권는 이 최당에서 당기기 당시되고 구우 기대기 세계되어 다시 당기기 이루어들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오퍼레이션 위험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1-11 <b>-1</b> -111-1-1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 재산의	
인승기업	가치 변동(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환전과정도 포함)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이 입합무자기가는 에뇌에 무지할 수 있으며 이 성수에 예정 국기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사금송환위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11000116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 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무지근=세근의 배국에 들기증이에 서늘이 분래에 응할 수 없기의 분래에 응어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	
	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의 원본액이 15 억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이 변경되어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동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이해상충	이 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이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 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u>증권대차 거래</u> <u>위험</u>	중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6 등급 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가 산정한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산정을 위해 산출한 <u>최근 결산일(2024 년 12 월 1 일)</u> 기준 이전 3 년간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u>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20,3091%
- 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sup>\*\*</sup> 97.5% 신뢰수준의 Value at Risk(VaR) 모형을 사용하며 과거 3 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을 곱하여 산출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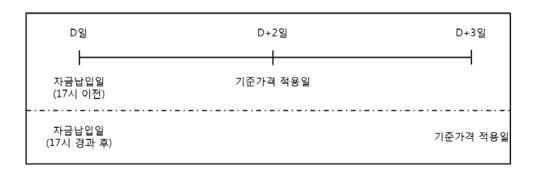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 아래의 매입, 환매 적용기준은 투자자가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 매입

####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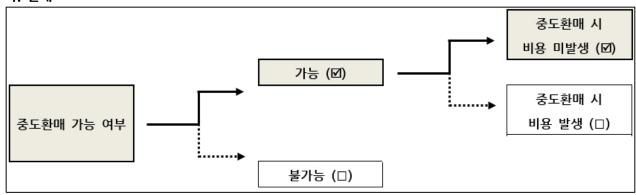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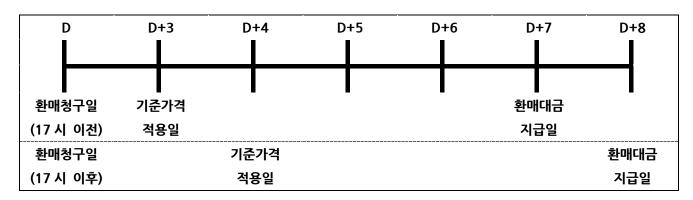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3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한 경우
    -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8영업일 (D+7)에 관련 세금 등을</u>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17시(오후 5시)경과 후 환매청구한 경우
    -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9영업일 (D+8)에 관련세금 등을</u> <u>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u>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 [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일부환매 청구시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i) 화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ii)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i)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ii)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iii)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iv) 기타 법 시행령 제 257조 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 (환매연기 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다. 전환절차: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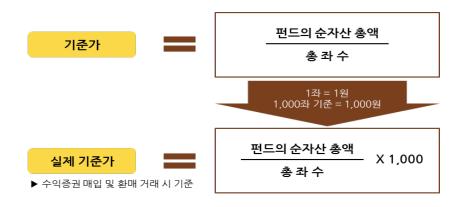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합니다. 단,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회사 본·지점에 공고·게시, -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주1)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가 이루어지며,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비용 및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 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기	·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기	
	· · ㅕ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1 96 7 74 47 402 77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르 취계버이
	씨는 외계급인 
다. 신용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l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기	ŀ격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비등록 지분증권	<ul> <li>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li> <li>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li> </ul>
채무증권 등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의 평가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
파생결합증권	<ul> <li>당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li> <li>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li> </ul>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외국집합 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채권	-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시장의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비상장채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거되작인	그 답답구시세산당기귀전외의 의결을 가서 골프도 장인 당답에 떠나 당기

####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CIO, <u>위험관리책임자</u> , 준법감시인, <u>운용 부서장, 운용지시 담당부서장,</u>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업 무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0.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	료율	
	종류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매입 시 납입금액의 1.0% 이내	-		-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매입 시 납입금액의 0.5% 이내	1		-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매입 시 납입금액의 0.7% 이내	1		-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	-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	-	-	-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i	-		-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	3 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	-		-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	-		-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	-		-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	-		-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	-		-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	-		-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부과기준	- 매입 시	- 환매 시	환매 시	- 전환시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	-		-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종류 A, 종류 A-E, 종류 A-G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종류 A 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 이내, 종류 A-E 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 이내, 종류 A-G 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7%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구분 (클래 스)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기 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 선취 오 프라인 (A)	0.8000	0.7000	0.0600	0.0220	1.5820	1.5800	0.0012	1.5832	1.6223	0.2099
수수료 선취 온 라인(A- E)	0.8000	0.3500	0.0600	0.0220	1.2320	1.2000	0.0014	1.2334	1.2720	0.2000
수수료 선취 오 프라인 무권유 저비용 (A-G)	0.8000	0.5000	0.0600	0.0220	1.3820	-	0.0013	1.3833	1.4222	0.2050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C)	0.8000	1.0000	0.0600	0.0220	1.8820	1.6700	0.0000	1.8820	1.9210	0.2132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C-E)	0.8000	0.5000	0.0600	0.0220	1.3820	1.3500	0.0009	1.3829	1.4211	0.1960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무권 유저비 용(C-G)	0.8000	0.7000	0.0600	0.0220	1.5820	ı	0.0007	1.5827	1.6212	0.2091
수수료 후취 온 라인슈 퍼(S)	0.8000	0.3000	0.0600	0.0220	1.1820	ı	0.0012	1.1832	1.2203	0.2106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랩 (C-W)	0.8000	0.0000	0.0600	0.0220	0.8820	-	0.0007	0.8827	0.9212	0.2091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고액	0.8000	0.0500	0.0600	0.0220	0.9320	-	0.0007	0.9327	0.9712	0.2091

(C-I)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기관 (C-F)	0.8000	0.0300	0.0600	0.0220	0.9120	-	0.0015	0.9135	0.9512	0.2102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개인 연금(C- P)	0.8000	0.9500	0.0600	0.0220	1.8320	-	0.0000	1.8320	1.8708	0.2137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개인연 금(C- Pe)	0.8000	0.4750	0.0600	0.0220	1.3570	ŀ	0.0011	1.3581	1.3970	0.2088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퇴직 연금(C- R)	0.8000	0.8000	0.0600	0.0220	1,6820	-	0.0000	1.6820	1.7201	0.2102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퇴직연 금(C- Re)	0.8000	0.4000	0.0600	0.0220	1,2820	-	0.0014	1,2834	1.3221	0.2117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슈퍼 개 인연금 (S-P)	0.8000	0.2500	0.0600	0.0220	1,1320	-	0.0014	1.1334	1.1722	0.2188
지급 시기		최초 보수 :	계산일로부터	터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12.02 ~ 2024.12.01]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12.02 ~ 2024.12.01]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총보수비용 비율(피투자집합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7) 직전 회계기간 중 실제 발생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12.02 ~ 2024.12.0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350

증권거래비용	52,490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발행분담금: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	
판매회사보수	-	키크니스
신탁업자보수	-	최초보수 계산일로부터 매3개월
일반사무관리보수	-	계산철도구나 메3개월
총보수	-	
기타비용	0.0384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384	-
합성 총보수·비용	0.0384	-
증권거래비용	0.2115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_			투자기간			
	구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ᄉᄉᆯᄸ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1	425	595	953	1,957
<del>δπ</del>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5	433	607	973	2,000
<b>조리</b>	ᄉᄉᆯᄸ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6	306	440	725	1,535
종류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0	314	452	746	1,579
<b>주</b> 리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1	356	506	822	1,718
A-G	종류     오프라인       A-G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5	364	518	843	1,761
<b>조리</b>	ᄉᄉᄀᇚᄭ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3	392	597	1,026	2,219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7	400	609	1,046	2,261
<b>주</b> 리	ᄉᄼᆯᇚᇧ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2	289	441	761	1,669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6	296	453	782	1,712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2	330	503	868	1,892
C-G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6	338	515	888	1,93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종류	수수료후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1	247	378	654	1,442
S	구구표우취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5	255	389	674	1,484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85	283	491	1,091
<del>οπ</del> C-W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193	295	512	1,137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6	195	299	518	1,150
<del>οπ</del> C-l	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0	203	311	539	1,195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1	292	508	1,127
<del>δπ</del> C-F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7	199	304	528	1,172
<b>조리</b>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8	381	581	999	2,165
<del>Sπ</del> C-P	종류     구구묘이공기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2	389	593	1,020	2,207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3	433	748	1,641
<del>Sπ</del> C-Pe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3	291	445	769	1,685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2	350	534	920	2,002
<del>οπ</del> C-R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6	358	546	940	2,043
종류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	268	409	708	1,556
<del>ŏπ</del> C-Re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	276	422	729	1,600
조리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237	362	627	1,384
종류 S-P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0	245	374	648	1,429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1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9 년 11 월 04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은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전환금액"이라 한다)
4 74 7 74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수령요건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u>세액공제</u>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
	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u>분리과세 한도</u>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u>연금외수령시 과세</u>	<u>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u>
<u>해지가산세</u>	<u> 없음</u>
	<u>- 천재지변</u>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u> </u>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
	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u>연금계좌 승계</u>	<u>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u>

<sup>※</sup>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u>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u> 납입액부터 적용)

#### ② 과세이연

<u>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u> 방법에 따라 과세함

#### 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 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u>※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u> 바랍니다.
- <u>※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u>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5기 (2023.12.02 ~ 2024.12.01)	회계감사면제 주)	해당없음
제4기 (2022.12.02 ~ 2023.12.01)	회계감사면제 주)	해당없음
제3기 (2021.12.02 ~ 2022.12.01)	회계감사면제 주)	해당없음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에 의거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항 목	2024.12.01	2023,12,01	2022,12,01					
운용자산	22,142,454,989	22,442,831,686	15,833,810,663					
증권	21,796,783,561	22,318,593,086	15,825,921,51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45,671,428	124,238,600	7,889,14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49,272,971	620,142,812	415,302,741					
자산총계	22,791,727,960	23,062,974,498	16,249,113,40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26,315,634	192,939,976	45,282,952					
부채총계	126,315,634	192,939,976	45,282,952					
원본	12,144,984,298	15,132,058,720	11,486,523,506					
수익조정금	-2,237,893,309	701,722,049	97,123,487					
이익잉여금	12,758,321,337	7,036,253,753	4,620,183,459					
자본총계	22,665,412,326	22,870,034,522	16,203,830,452					

(단위: %, 원)

(근귀: 70, 년)										
	통합 손익계산서									
	제 5기	제 4기	제 3기							
항 목	(2023,12,02 ~	(2022,12,02 ~	(2021,12,02 ~							
	2024.12.01)	2023.12.01)	2022,12,01)							
운용수익	5,776,500,875	1,828,882,333	1,222,804,054							
이자수익	6,296,328	1,974,673	254,79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770,204,547	1,826,907,660	1,222,549,26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54,343,861	198,349,529	147,685,607
관련회사 보수	254,343,861	198,349,529	147,685,60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847,734	4,723,889	3,614,400
당기순이익	5,516,309,280	1,625,808,915	1,071,504,047
매매회전율	116.01	135.28	121.36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5)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5기 0원, 4기 0원, 3기 0원 발생)
- 주 6)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5기 0원, 4기 0원, 3기 0원 발생)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당기		전기			
구분		거래비용		게기기아	거래비용		
l E	거래금액(A)	금액(B)	거래비용비율 (B/A)	거래금액 (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39,172	32	0.08	45,728	38	0.08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26,171	19	0.07	26,506	21	0.08	
장내파생상품	31,596	1	0.00	63,506	3	0.00	
장외파생상품							
합계	96,939	52	0.05	135,740	62	0.05	

주1) [직전 회계연도: 2023.12.02 ~ 2024.12.01]

있습니다.

- 주2)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 주3)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4)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	매매회전율	동종유형 평균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의 평균가액(B)	(A/B)	매매회전율	
270,781	17,000	299,138	22,186	19,123	116.01	32.04	

- 주1) [직전 회계연도: 2023.12.02 ~ 2024.12.01]
- 주2)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를 의미합니다.
-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너. 제구경네프	제5기 (20	24.12.01)	제4기 (20)	23.12.01)	제3기 (2022.12.01)		
과 목	금	액	一	액	市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345,671,428 0 0	0 0 345,671,428	124,238,600 0 0	0 0 124,238,600	7,889,147 0 0	0 0 7,889,147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0 0 0 0	21,796,783,561	0 0 0 0	0 22,318,593,086	0 0 0 0	0 15,825,921,516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작물	21,796,783,561 0 0 0 0 0	0	22,318,593,086 0 0 0 0 0	0	15,825,921,516 0 0 0 0 0	0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0 0 0 72,769,405 0	0 649,272,971	0 0 0 137,631,854 0	0 620,142,812	0 0 0 7,400,736 0	0 415,302,741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829,099 575,674,467 0 0 0	22,791,727,960	10,177 482,500,781 0 0 0	23,062,974,498	596 407,901,409 0 0 0	16,249,113,404	
부 채	0 0 0	0 0 126,315,634	0 0	0 0 192,939,976	0 0	0 0 45,282,952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0 72,048,917 54,266,717 0 0	126,315,634 0	0 136,269,162 56,670,814 0 0	192,939,976 0	7,327,462 37,955,490 0	45,282,952 0	
1. 원본 2. 이월잉여금 (발행좌수 당 기: 12,144,984,298 좌 전기: 15,132,058,720 좌 전전기: 11,486,523,506 <sup>좌</sup>	12,144,984,298 10,520,428,028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12,758,321,337 -2,237,893,309	15,132,058,720 7,737,975,802	7,036,253,753 701,722,049	11,486,523,506 4,717,306,946	4,620,183,459 97,123,487	
(기준가격 당 기: 전기: 1,862.64 원 전기: 1,510.07 원 전전기: 1,395.53 )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 총계		22,665,412,326 22,791,727,960		22,870,034,522 23,062,974,498		16,203,830,452 16,249,113,404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5기 (2023.12.0	2 ~ 2024.12.01)	제4기 (2022.12.0	02 ~ 2023.12.01)	제3기 (2021.12.0	02 ~ 2022.12.01)
과 즉	己	액	山	액	日	액
운 용 수 익		5,776,500,875		1,828,882,333		1,222,804,054
1. 투자수익		6,296,328		1,974,673		254,791
1. 이 자 수 익	6,296,328		1,974,673		254,791	
2. 배당금 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770,204,547		1,829,071,505		1,225,759,428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5,770,204,547		1,829,071,505		1,225,759,428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0		0	0.400.045	0	0.040.40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0		2,163,845		3,210,165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2,163,845		2 210 165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2,103,043		3,210,165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Ŭ	260,191,595	Ü	203,073,418	Ů	151,300,007
1. 운용수수료	199,973,140		160,245,863	,_,	122,105,350	, , ,
2. 판매수수료	39,374,320		26,086,787		16,424,051	
3. 수탁수수료	14,996,401		12,016,879		9,156,206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0		0		0	
6. 기 타 비 용	5,847,734		4,723,889		3,614,400	
당기순(손실)이익		5,516,309,280		1,625,808,915		1,071,504,047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454		107		93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종류 A] (단위: 억좌, 억원)

	フレラマレ	.a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7171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4.20	6.20	3.00	5.10	1.90	3.20	5.40	10.00
2022,12,02 ~ 2023,12,01	3.90	5.40	2.10	3.10	1.80	2.60	4.20	6.30
2021,12,02 ~ 2022,12,01	6.30	8.20	2.40	3.20	4.80	6.50	3.90	5.4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5,594,696] 좌 / [10,172,834]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323,571] 좌 / [3,427,799]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3,665,333] 좌 / [4,997,827] 원

[종류 A-E] (단위: 억좌, 억원)

	フレラ スレ	기간초 잔고		회계기	간 중		기간말 잔고	
기간	기단교 전표		설정(발행)		환매		기단을 선포	
기단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5.70	8.40	31.50	54.10	19.30	33.20	17.90	33.20
2022,12,02 ~ 2023,12,01	3.60	4.90	6.00	8.80	4.00	5.80	5.70	8.50
2021,12,02 ~ 2022,12,01	0.60	0.90	5.00	6.80	2.00	2.80	3.60	5.0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4,129,783] 좌 / [44,004,034]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5,057,740] 좌 / [7,482,266]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5,272,620] 좌 / [7,209,357] 원

[**종류 C**] (단위: 억좌, 억원)

	フレフトラ スト	- <b>7</b>		회계기	간 중		717101 71	7
기간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인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0.40	0.60	0.10	0.20	0.10	0.20	0.30	0.70
2022,12,02 ~ 2023,12,01	0.50	0.70	0.10	0.20	0.20	0.30	0.40	0.60
2021,12,02 ~ 2022,12,01	0.70	0.90	0.20	0.20	0.40	0.50	0.50	0.7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90,720] 좌 / [533,865]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10,309] 좌 / [164,369]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308,497] 좌 / [424,898] 원

[종류 C-E] (단위: 억좌, 억원)

	フリフレラ フレ	. 7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신될 전고	
기인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1.30	1.90	3.90	7.00	1.90	3.30	3.30	6.30
2022,12,02 ~ 2023,12,01	1.20	1.70	1.40	2.20	1.40	2.00	1.30	1.90
2021,12,02 ~ 2022,12,01	0.80	1.10	1.10	1.60	0.70	1.00	1.20	1.7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4,060,196] 좌 / [7,518,586]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975,422] 좌 / [1,465,334]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361,604] 좌 / [1,890,585] 원

[종류 S] (단위: 억좌, 억원)

	フリフトラ スト	. <del> </del>		회계기	간 중		기간말 잔고	
기간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선될 선포	
기단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3.30	4.80	3.00	5.10	2.70	4.50	3.60	6.50
2022,12,02 ~ 2023,12,01	1.40	1.90	3.60	5.20	1.80	2.60	3.30	4.80
2021,12,02 ~ 2022,12,01	0.40	0.50	2.00	2.70	0.90	1.20	1.40	2.0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4,795,889] 좌 / [8,545,171]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973,340] 좌 / [4,297,427]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5,827,196] 좌 / [7,784,259] 원

[종류 C-F] (단위: 억좌, 억원)

	フレラマ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신조 전고		설정(발행)		환매		기신길 산고	
기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 12 02	(21111117)		(211127)		(2111127)		(244467)	
2023,12,02 ~ 2024,12,01	106.10	159.60	6.70	11.90	52.40	94.70	60.40	114.10
2022,12,02 ~	92.90	129.10	13.80	20.60	0.60	0.90	106.10	161.60
2023,12,01								

2021,12,02 ~	90.70	118.20	2.10	4.10	0.00	0.00	02.00	121 20
2022.12.01	89.70	110.20	3.10	4.10	0.00	0.00	92.90	131.3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06,431,081] 좌 / [197,433,912]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32,514,362] 좌 / [199,374,483]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54,022,199] 좌 / [214,175,568] 원

[종류 C-P] (단위: 억좌, 억원)

	기간초 잔	-D		회계기	간 중		기간말 잔	<b>7</b>
기간	기간도 전포		설정(발행)		환매		기산을 선포	
기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1.20	1.90	0.10	0.20	0.10	0.10	1.30	2.40
2022,12,02 ~ 2023,12,01	1.10	1.60	0.10	0.10	0.00	0.00	1.20	1.90
2021,12,02 ~ 2022,12,01	1.10	1.40	0.10	0.10	0.00	0.00	1.10	1.6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177,659] 좌 / [2,171,520] 원 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441,486] 좌 / [660,546] 원

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899,860] 좌 / [1,244,452] 원

[종류 C-Pe] (단위: 억좌, 억원)

	기간초 잔	-D		회계기	간 중		기간말 잔	-T
기간	기간과 선포		설정(발행)		환매		기단을 선포	
기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2.30	3.50	2.70	4.80	1.30	2.50	3.70	7.00
2022,12,02 ~ 2023,12,01	2.10	2.90	2.00	3.00	1.80	2.60	2.30	3.60
2021,12,02 ~ 2022,12,01	1.60	2.20	0.80	1.10	0.30	0.50	2.10	3.0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5,071,600] 좌 / [9,388,392] 원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932,901] 좌 / [2,902,713] 원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793,054] 좌 / [3,876,786] 원

[종류 C-R] (단위: 억좌, 억원)

	フリフトネースト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단고 전포		설정(발행)		환매		기단을 연포	
기인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0.10	0.30	0.00	0.00	0.00	0.00	0.10	0.30
2022,12,02 ~ 2023,12,01	0.10	0.20	0.00	0.00	0.00	0.00	0.10	0.30
2021,12,02 ~ 2022,12,01	0.00	0.00	0.10	0.20	0.00	0.00	0.10	0.2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14,938] 좌 / [219,880] 원

[종류 C-R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 설정(발행)		간 중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	2023,12,02 ~	11.40	16.90	6.90	12.00	4.10	7.00	14.20	26.50

2024.12.01								
2022,12,02 ~ 2023,12,01	4.70	6.50	10.80	15.90	4.20	6.10	11.40	17.10
2021,12,02 ~ 2022,12,01	3.00	4.00	3.30	4.70	1.60	2.20	4.70	6.8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197,031] 좌 / [36,965,007] 원 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0,078,203] 좌 / [14,963,106] 원 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2,914,196] 좌 / [31,444,003] 원

[종류 S-P] (단위: 억좌, 억원)

	フリフレラ フレ	기간초 잔고		회계기	간 중		기간말 잔고	
기간	기선조 선포		설정(발행)		환매		기산을 선포	
기간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2 ~ 2024.12.01	14.80	21.40	3.80	6.20	8.00	12.70	10.60	19.20
2022,12,02 ~ 2023,12,01	2.80	3.70	15.70	22.50	3.70	5.30	14.80	21.70
2021,12,02 ~ 2022,12,01	1.40	1.80	2.90	3.90	1.60	2.10	2.80	3.80

주1) 20231202 ~ 2024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6,540,988] 좌 / [29,512,761]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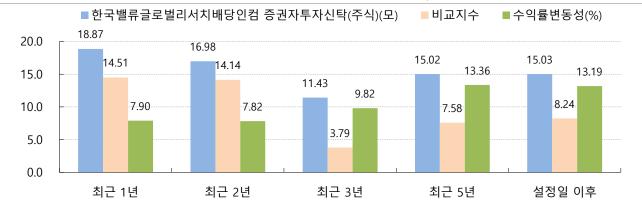
주2) 20221202 ~ 2023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5,301,066] 좌 / [22,144,926] 원

주3) 20211202 ~ 202212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6,402,639] 좌 / [8,564,618] 원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2025년 1월 15일. 단위: %)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기간	2024,01,16~	2023.01.16~	2022.01.16~	2020.01.16~	2019,12,02~
	2025,01,15	2025,01,15	2025,01,15	2025.01.15	2025.01.15
운용	18.87	16.98	11.43	15.02	15.03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24
수익률변동성(%)	7.90	7.82	9.82	13.36	13.19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17.05	15.18	9.71	13.25	13.26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24
수익률변동성(%)	7.92	7.83	9.83	13.38	13.21
수수료선취 온라인(A- E)	17.44	15.58	10.08	13.64	13.68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7.77
수익률변동성(%)	7.91	7.82	9.83	13.37	13.3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 인(C)	16.71	14.85	9.39	12.91	12.96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58
수익률변동성(%)	7.92	7.83	9.83	13.38	13.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17.27	15.41	9.92	13.47	13.52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49
수익률변동성(%)	7.91	7.83	9.83	13.37	13.23
수수료후취 온라인슈 퍼(S)	17.50	15.64	10.14		13.74
비교지수	14.51	14.14	3.79		7.61
수익률변동성(%)	7.91	7.83	9.83		13.4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 인 기관(C-F)	17.81	15.94	10.43	13.99	14.01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24
수익률변동성(%)	7.91	7.82	9.83	13.37	13.2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 인 개인연금(C-P)	16.76	14.91	9.44	12.97	12.99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24
수익률변동성(%)	7.92	7.83	9.83	13.38	13.2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17.30	15.44	9.95	13.50	13.54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58
수익률변동성(%)	7.91	7.83	9.83	13.37	13.2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 인 퇴직연금(C-R)	16.94	15.08	9.60	13.14	13.14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7.95
수익률변동성(%)	7.92	7.83	9.83	13.38	13.2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Re)	17.39	15.52	10.03	13.58	13.65
비교지수	14.51	14.14	3.79	7.58	8.58
수익률변동성(%)	7.91	7.83	9.83	13.37	13.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슈퍼 개인연금(S-P)	17.56	15.69	10.19		13.80
비교지수	14.51	14.14	3.79		7.61
수익률변동성(%)	7.91	7.82	9.83		13.48
주1) 비교지수(0.95 * [MSCL	$\Delta C M (HSD) + (OC$	75 ↑ [CVII] <del>- 1</del> 31]/ (H	I교기스 서교에는 투기	시타에 보고니는 보기	이 비용이 바였다기

주1) 비교지수(0.95 \* [MSCI ACWI (USD)]) + (0.05 \* [CALL금리])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25년 1월 15일. 단위: %)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024.01.16~	2023.01.16~	2022.01.16~	2021.01.16~	2020.01.16~
	2025.01.15	2024.01.15	2023.01.15	2022,01,15	2021,01,15
운용	18.92	15.13	1.08	23.87	17.51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17.10	13.35	-0.50	21.96	15.72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선취 온라인(A-E)	17.49	13.74	-0.15	22.38	16.12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16.76	13.02	-0.79	21.59	15.37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 E)	17.32	13.57	-0.30	22.19	15.95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17.55	13.80	-0.10	22.44	14.82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1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C-F)	17.87	14.10	0.17	22.76	16.46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16.81	13.07	-0.74	21.65	15.44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 인연금(C-Pe)	17.35	13.60	-0.27	22.22	15.97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	16.99	13.24	-0.59	21.84	15.61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 직연금(C-Re)	17.44	13.68	-0.20	22.31	16.06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8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17.61	13.85	-0.05	22.49	14.90
비교지수	14.55	13.78	-14.21	12.25	14.10

주1) 비교지수: (0.95 \* [MSCI ACWI (USD)]) + (0.05 \* [CALL금리])(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세전 누적수익률 수치입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8)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 %)



9	통화별		증:	권		파생	상품		특별자산 단기대출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KRW	0	0	0	219	0	0	0	0	0	4	2	224
	KUAA	(0.00)	(0.00)	(0.00)	(97.62)	(0.00)	(0.00)	(0.00)	(0.00)	(0.00)	(1.68)	(0.70)	(100.00)
	합계	0	0	0	219	0	0	0	0	0	4	2	224
	합계	(0.00)	(0.00)	(0.00)	(97.62)	(0.00)	(0.00)	(0.00)	(0.00)	(0.00)	(1.68)	(0.70)	(100.00)

주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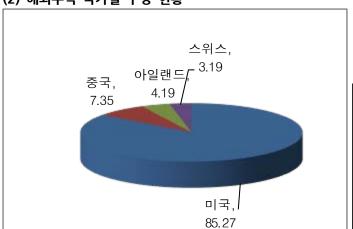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 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1) 국내 주식 업종별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 %)

구분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보험	8.3	30.77
2	음식료·담배	6.7	24.58
3	전기·전자	6.5	23.97
4	운송장비·부품	5.6	20.68
5	기타	0.0	0.00
	합 계	27.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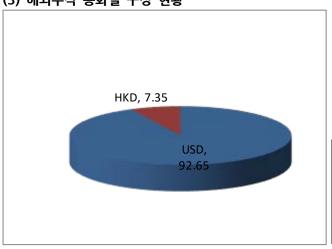
# (2)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십만 USD), %)

국가	해외주식			
<u></u> → 71	급액	비중		
미국	117	85.27		
중국	10	7.35		
아일랜드	6	4.19		
스위스	4	3.19		

# (3)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십만 USD), %)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 %)

거래통화	해외주식			
기대증와	량 대	비중		
USD	127	92.65		
HKD	10	7.35		

#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한국밸류글로벌리서치배당인컴증권모투자신탁(주식)



통화별		증	권		파생	상품		특별	자산	다기대초	기대출 기타 자신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및 예금		자산총액
EUR	0	0	0	0	0	0	0	0	0	0	0	0
EUN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HKD	10	0	0	0	0	0	0	0	0	0	0	10
TIND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56)
JPY	0	0	0	9	0	0	0	0	0	0	0	9
JFT	(0.00)	(0.00)	(0.00)	(99.99)	(0.00)	(0.00)	(0.00)	(0.00)	(0.00)	(0.01)	(0.00)	(4.20)
KRW	28	0	0	0	0	0	0	0	0	10	5	43
KUAA	(64.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95)	(11.53)	(19.08)
USD	129	0	0	31	0	0	0	0	0	2	0	162
030	(79.71)	(0.00)	(0.00)	(19.02)	(0.00)	(0.00)	(0.00)	(0.00)	(0.00)	(1.14)	(0.12)	(72.16)
합계	167	0	0	40	0	0	0	0	0	12	5	225
E 71	(74.39)	(0.00)	(0.00)	(17.93)	(0.00)	(0.00)	(0.00)	(0.00)	(0.00)	(5.40)	(2.29)	(100.00)

주 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1) 국내 주식 업종별 자산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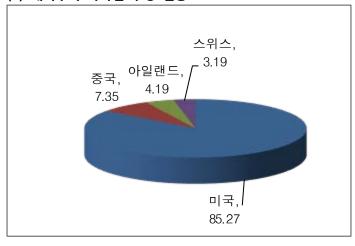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 %)

· / · · · ·		,	, , , ,
구분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보험	8.5	30.77
2	음식료·담배	6.8	24.58
3	전기·전자	6.6	23.97
4	운송장비·부품	5.7	20.68
5	기타	0.0	0.00
	합 계	27.6	100,00

(주1) 보유비율 = (평가액 / 총평가액) \* 100

#### (2)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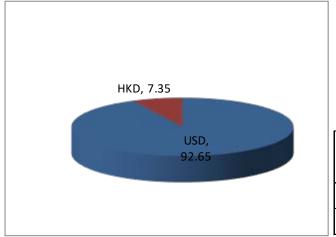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십만 USD), %)



국가	해외주식			
녹기·	래	비중		
미국	119	85.27		
중국	10	7.35		
아일랜드	6	4.19		
스위스	4	3.19		

# (3)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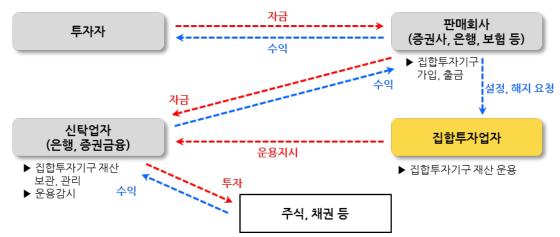
(기준일: 2024.12.31 단위: 억원(십만 USD), %)



거래통화	해외주식			
기대증와	증 [급	비중		
USD	129	92.65		
HKD	10	7.35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기, 되지 개표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3 시 미 연리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주소 및 연락처	(대표전화: 02-6978-6300, vam.koreainvestment.com)
	2006. 02: 밸류운용㈜ 설립
	2006. 04: 자산운용업 허가,
	한국밸류자산운용㈜ 사명변경
	2006. 12: 한국밸류 10 년투자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6 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상 수상
됩니어됨	2006. 12: 이채원 전무, 금융감독원 선정 '올해의 업무유공자' 수상
회사연혁	2008. 0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9. 04: 국내 최초 고객초청 운용보고대회 개최
	2009. 07: 투자일임업 실시
	2010. 02: '생활속의 펀드이야기' 펀드 역사 전시회 개최
	2010. 02: 투자자문업 실시
	2012. 07: 최대주주 변경(한국투자운용지주→한국투자증권)
자본금	131.3 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증권(100%)

#### 나. 주요 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재	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4,12,31	2023,12,31	계정과목	'24.01.01 ~'24.12.31	'23,01,01 ~'23,12,31
현금및예치금	76,629	107,064	영업수익	124,850	124,91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75,501	870,168	영업비용	36,240	24,645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682	766	영업이익	88,610	100,265
지분법투자자산	304,936	207,773	영업외수익	14,925	24,780
종속기업투자주식	202,664	145,867	영업외비용	27,026	15,530
대출채권및수취채권	319	2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6,510	109,515
유형자산	3,460	4,318	법인세비용	18,572	20,578
무형자산	1,051	1,092	당기순이익	57,938	88,936
기타자산	9,257	24,561			
자 산 총 계	1,174,500	1,361,888			
퇴직급여부채	288	169			
충당부채	176	168			
이연법인세부채	598,925	607,036			
기타부채	34,673	21,954			
부 채 총 계	634,061	629,326			
자본금	13,130	13,130			
자본잉여금	6,565	6,5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6)	(555)			
이익잉여금	521,360	713,422			
자 본 총 계	540,438	732,56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74,500	1,361,888			

(단위: 백만원)

# 라 운용자산 규모

<b>라. 운용자산 규모</b> (2025.01.15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丁正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b>구</b> 중인	국물시선	논합시선	IVIIVIF	· 등 기
수탁고	12,487	486	7,461	1,884	0	0	6,655	0	28,973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회사명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업무위탁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의안분석 서비스	전산업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대표전화 : 02-3775-333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대표전화 : 1877-7000)
회사연혁	2002년 6월 설립	1997년 9월 설립
홈페이지주소	http://www.cgs.or.kr	www.skbroadband.com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1599-1111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bhana.com

가.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금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나, 의무 및 책임

- (1) 의무
  - (가)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0
회사명	주식회사 KB 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1588-9999)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 \*최초설정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는 신한아이타스, 2022년 9월 19일부터 KB국민은행으로 변경
- \*\*2024년 6월 3일자로 KB펀드파트너스로 사명 변경
  - **가. 주요업무:** 기준가격 산정 및 통보

#### 나, 의무 및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

한국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02-2251-1300)	www.koreaap.com
KIS 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NICE 피앤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 가. 주요 업무

- (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나)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나.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가)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나)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 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라)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 (i)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ii)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iii)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의결권 행사방법

- (i)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ii)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iii)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iv)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연기수익자총회

- (i)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ii)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iii)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나)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워본액이 50억워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3),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i)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ii)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ii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iv)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 (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 서류"라 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i) 재무상태표
  - (ii) 손익계산서
  - (iii) 자산운용보고서
-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ii)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iii)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 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i) 결산서류
  - (ii) 회계감사보고서
  - (iii) 수익자총회 의사록

- (라)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상기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마)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집합투자업자가 <u>법 제230조에 따른</u>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u>같은 조</u>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역
  -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8. 투자신탁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마)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사)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아)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공시방법]

- (가)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이해관계인	ᄁᄁᇝᇰ	피사이 조금	שור ור		
펀드명	성명(상호)	관 계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한국밸류글로벌리서치 모배당인컴주식	한국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3,588
한국밸류글로벌리서치 모배당인컴주식	한국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선물	40,028

(기준일: 2025.01.15, 단위: 백만원)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1)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기본원칙
- 당사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선정 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Trader, Manager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이 주식부문, 채권부문 모두 3 개월에 1 회 실시합니다.
- (3) 평가 항목
- 매매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 정확성, 시장정보 제공 및 수준, 신용도, Back-office 의 서비스 수준, 수수료 수준 등 매매업무 기여도와 관련된 사항과 시장, 업종 또는 종목 분석자료의 효용성, 분석 Tool 의 제공, 시장정보의 제공 및 수준, 종목추천, 기업탐방 주선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펀드운용 및 기업분석 업무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주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 억원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일시 환매로 인한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 -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 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

- 주 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존속기간이 3 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간까지 투자. 다만, 당초 존속기간이 3 년 미만이었으나. 집합투자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년간 투자
  - ② 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펀드로서 임의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의 편입(신규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투자 의무를 승계(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 주 2)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sup>(</sup>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 내역입니다.

<sup>(</sup>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 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
1 7/16-4	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
펀드코드	유코드를 말합니다.
01=171.4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지수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
레버리지효과	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
	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